

웅지세무대학교 총 학생 회	동 아 리 연 합 회 시 행 세 칙	제정일자	20.11.17.
		최근개정	-

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웅지세무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 총학생회에 속하는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의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 및 범위)** 대학의 모든 동아리와 그 구성원은 재학생으로 한다.

**제3조(동아리연합회의 장)** ① 동아리연합회의 장은 각 동아리의 대표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선출한 자로 한다.

②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동아리의 개설)** 동아리를 새로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동아리 개설목적과 활동이 다른 동아리와 중복 불가
2. 새로 개설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교수 1인
3. 동아리의 개설목적에 찬성하는 학생이 15인 이상

**제5조(동아리의 가입)** 동아리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한다.
2. 동아리에 고문 등의 자격으로 입회하였을 경우는 소속된 동아리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개설 신청절차 및 승인)** 동아리를 결성(신규·재등록 포함)하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정한 신청기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초 학생관할부서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개설 시 구비서류)** ① 학생이 동아리의 개설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생 동아리 승인신청서 1부. [서식 제1호]
2. 가입예정회원 명부 1부. [서식 제2호]
3. 연간활동 계획 1부. [서식 제3호]
4. 지도교수 승낙서 1부. [서식 제4호]

5. 동아리 서약서 1부. [서식 제5호]
6. 예산 계획서. [서식 제6호]
7. 동아리 회칙 1부.

② 총학생회는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학생관할부서에 신청하여 해당동아리의 개설을 승인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지도교수)** ①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동아리 회원 과반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교원이 지도교수를 맡을 수 있으며 동아리의 원활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지도교수는 2개 이상의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.

②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·지도하여야 한다.

③ 지도교수가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부정활동 동아리의 폐지)** 개설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관할부서장의 제청에 따라 해당 동아리를 폐지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의 장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1. 동아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활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2. 동아리의 활동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
3.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한 경우
4.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관할부서장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**제10조(책임준수)** 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동아리에서 진다.

② 동아리실에서는 전열기의 사용·고성방가와 소음·음주 및 취침행위·낙서 등을 금하며,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수업시간에는 일체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.

④ 동아리실은 본교 재학생 이외의 자는 출입할 수 없다. 다만, 교학처에서 허가를 득한 자는 예외로 하며 외부 출입자 명단은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허가 없이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.

**제11조(감염병 등에 의한 동아리활동제한)** 감염병 혹은 국가재난 등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활동을 고려한다.
2. 비대면 시 동아리 개설은 중단한다.
3. 대면으로 전환 시 개설 기간이 공지된 후 개설 절차를 진행한다.
4. 교내 집단감염의 발생 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.
5. 총학생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6. 위 각 호를 불이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의 책임은 해당 동아리에 있다.
7. 6호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지도교수와 해당 동아리에 있다.

**제12조(세칙의 개정)** 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총학생회가 발의하여 학생관할부서와 협의하여 개정한다.

**제13조(공포 및 시행)** 이 세칙이 개정될 경우 총학생회장은 홈페이지에 공포하여 시행한다. 다만,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공포한다.

부 칙 <1판-제정 2020.11.17.> <시행/공포 2020.11.18.>  
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

[서식 제2호]

## 가입(예정)회원명단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기)

작성일 :        년    월    일

일련 번호	학부(과)	학번	학년	성명	직전학기 성      적	핸드폰번호	서명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11							
12							
13							
14							
15							
16							
17							
18							
19							
20							





[서식 제5호]

## 서 약 서

본 동아리는 등록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.  
준수하지 않을시 동아리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폐지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아리 명 :

동아리대표 : (서명)

